

AUG 2020. Issue 142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여름이야기

 **Cover Story**

06 ... 2021년 관세법 개정의 영향과 의의

 **FTA News**

10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제도 변경사항

 **Inside Vietnam**

13 ... 베트남의 AEO 제도

17 ... EU, GSP REX 전면전환 유예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19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관세 관련 심판사례**

22 ...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일시 사용한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즐거운 이야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심술궂은 악의의 이야기만이라도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해마다 장마가 그치고 햇빛이 짹짹 내리쬐는 여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뭉게구름같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회사들이 업무를 정지합니다. 도심의 뜨거운 아스팔트를 벗어난 사람들은 야호! 푸른 파도가 부서지는 흰 모래밭을 그리며 바닷가로 달려갔지요. 일상을 떠난 젊은이들은 여름이 선사하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름에도 해운대가 있는 부산으로 가는 기차는 전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흥분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아저씨도 통로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인지, 업무차 기차를 탄 사람들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핸드폰을 드려다 보는 젊은 여성만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의 유행인지 앞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있는 젊은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차에서, 지하철에서, 빵집에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저도 나이 든 사람이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 작게 탄식을 했습니다. '쫄쫄... 어찌 저런 모습으로 집을 나와 다닐까? 단정치 못하네. 아무 생각없는 아이들인가 보다..'

이번 달 Cover Story는 '2021년 관세법 개정의 영향과 의의'입니다. FTA News는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Inside Vietnam은 '베트남의 AEO 제도와 EU, GSP REX 전면전환 유예'입니다. 또한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이며, 관세 관련 심판사례는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일시 사용한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017년 3월 TV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재판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시간 자동차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 우리의 마음은 저러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긴장된 일일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에 묻혀 있었으면 머리 뒤쪽에 헤어롤이 매달려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집을 나왔을까...?

그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우린 어떤 길을 걸어 왔을까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신기술들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며 일부에 집중되던 권력도 분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개방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을 바랐습니다. 좌로 우로 갈 때까지 가보는 극단적 자유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해주며 중간 정도에서 손을 잡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생각과 행동이 양극으로 갈라져버린 사람들의 싸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 한다는 알고리즘의 기술은 편가르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자신들만의 논리로 무장한 양극의 사람들은 점점 더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각한 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편의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격렬하게 뒷발질 하는 얼룩말 무리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얼룩말의 우두머리 수컷은 천적에게 달려들어 적극적으로 무리를 방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적이 된 것인가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생각의 다름,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헤어롤을 앞머리에 매단 젊은 여성들과 뒷머리에 매단 재판관 사이에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간극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머리 파의 삶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앞머리에 매달았다고 생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뒷머리 파라고 앞뒤 짝 막힌 끈대라며 그들로부터 귀를 막아야 할까요? 뒷머리에 헤어롤을 매달았다고, 재판관이라고 앞머리 파보다 더욱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야단을 쳐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말랑말랑 해져야 합니다.

장기간의 폭우와 이어지는 폭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여름입니다. 예전과 같이 가벼운 여행, 흥분된 새로운 만남의 여름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즐거운 이야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심술궂은 악의의 이야기만이라도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투덜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극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서로 반대편으로만 몰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자꾸 나가면'...? 헛된 바램일까요?

'땡동!' 또 문자가 왔습니다.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 비대면모임으로 대체...' 다시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안에 선한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바라지 않는 낯선 것들이 슬쩍슬쩍 들어와 있을 테니까요. "미워함, 업신여김, 경멸함, 함부로 대함, 험담, 화냄, 교만함, 완고함...." 아니 이 참에 웃기는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의에 찬 이야기들을 덮어 씌울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힘든 전투에서 투쟁하고 있으므로."**

*Plato(428-348 BCE), Wikipedia

**송길영(2020), 각자의 전투 매일의 생존, 중앙일보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Cover Story

2021년 관세법 개정의 영향과 의의

관세법 개정사항

2020년은 COVID-19로 예상치 못했던 변화에 적응하고, 지나긴 장마로 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7.22)하였으며, 정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정기국회 제출, 국회 심의 및 의결 이후 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부분 중에서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신고인이 주목하여야 하는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과세표준 무신고 및 과소신고의 가산세 신설 (관세법 제 42조, 제42조의 2)

현재는 신고·납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부족세액 10%, 1일 0.025% 등)가 부과되나, 개정안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기본세율·협정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법 등의 감면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부정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예정이다.

(예측) 무세인 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입부가세 및 나아가 법인세 탈루라는 영향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납세자(수입자) 및 신고인이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미 정 관세사
mjch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잠정/확정신고
- 요건확인
- 품목분류

구분	가산세 과세대상	세율		
		과소 신고	무신고	부정 행위
과세표준(가격)	과세표준 누락분	0.8%	1.6%	3.2%
과세표준(수량)	과세표준 누락분 x 종량세 기본세율	10%	20%	40%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그런데, 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증속세이므로, 관세가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며, 대법원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 참고 2015두56120)

2. 특수관계 거래 시, 관세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의무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 납세자(수입자)의 거래가격 입증의무 강화 (관세법 제 30조 4.5항, 제37의4 6.7항)

현재 특수관계자(다국적기업)간 거래 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본사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기 어렵고,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거래가격을 불인정(배제)'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납세자(수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예측) 이번 개정안으로 과세당국 및 수입자가 입증주체에 대한 논쟁 [국제법규(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4.1- 수입자의 입증부담)와 대법원 판례(2007두9303판결- 과세당국의 증명 부담)]이 법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나, 본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수입자는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 후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거래 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사유' 확대 → 증명자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신설)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신설) ○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p>(*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p>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2)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관세법 제277조 1항)

현재,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시정요구 미이행 및 불분명한 자료 등 제출, 시정요구(30일 내) 미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수 있다. (3. 에 추가 설명)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미제출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미제출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시정요구 이행기간 (30일) 내, 자료 미제출 또는 미시행 시: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 (신설) <p>*1억원+2억원 (총 최대 3억원)</p>
적용시기: 21.1.1 이후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3. 세액 경정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부가가치세법 안 제 35조 2항)

현재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할 것을 수입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명시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positive방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른 벌칙적용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negative방식)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되어 발급사유가 확대될 예정이다.

(예측)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들의 특수관계 거래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어려워지게 되어, 납세자의 거래가격에 대한 입증 책임의무 또한 강화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현행	개정안
품목분류위원회에서의 품목분류 변경, 합병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u>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u>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u>제외하고</u>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의 변경 (3년→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 2) 할당관세 등을 적용 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반출 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3) 폐기물 등 하역 시, 국민보건·사회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 제한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법 개정내용
- 4)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
(고시→ 시행령·시행규칙)

그 밖에 개정될 내용 및 취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법예고(<http://www.moef.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하기 바람.(출처: 20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FTA News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제도 변경 사항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일반(비특혜) 및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APTA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산업부 고시 2020-70)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 다 은 관세사
dechu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 관세환급

개정 주요 내용

1) 신청자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전 규정에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신청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신청자 자격은 ①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 ②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단, 발급기관장이 인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수출물품 제조자 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수출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경우 정당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며, APTA 협정은 상업송장 상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발급시한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발급시한을 선적일로부터 가장 1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단, APTA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제한된다. 유의할 점은, 선적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발급일자 소급 시 소급된 발급일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이다.

3)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

종전에는 서면발급방법과 전자발급방법으로 구분하였고, 전자발급방법으로 인터넷사이트 통신망 방식을 규정하며 EDI방식과 XML방식을 적시하였다. 개정을 통해 EDI를 통한 교부방식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EDI 방식 사용자는 XML방식 또는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XML방식과 인터넷 방식, 또는 서면교부 방식으로 변경)

4) 원산지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을 통하여,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 적용순서를 명시하였다.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①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②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제15조 원산지기준)

5) 관세 양허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입증자료에 관한 사항

과거에는 APTA 등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명확하게 규정된 입증서류 양식이 없어, FTA 원산지 소명서 양식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관세 양허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인 '기준 별 사실신고서'의 서류의 명칭을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로 변경하였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사용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양허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 GSP(일반특혜관세) 공여국에 관한 사항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에서 캐나다가 삭제되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4개국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개정 내용 중 발급시한에 관한 사항은 신청 시기에 따라 발급가능여부가 달라지며, APTA 등 관세 양허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에 관한 변경 사항은 입증자료 구비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특히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 발급 실무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새로운 입증서류 양식에 맞추어 업무 셋팅을 초기에 잘 해두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side Vietnam

베트남의 AEO 제도와 EU, GSP REX 전면전환 유예

베트남의 AEO 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인정한 성실한 무역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AEO 공인을 받는 경우 통관 절차와 자금 부담 운용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되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강화) 법규 준수, 안전 관리 역량 등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이에 따른 거래선 유지/확보 등에 유리
- (비용 절감) 내부 관리 능력이 제고되어 물품의 적기운송, 도난 등 손실 방지, 재고 화물 감소 등의 물류 비용 절감
- (세관 혜택)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 혜택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FTA 교육
- 관세환급
- 품목분류

국가 간에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완료 시 수출국의 AEO 공인 지위로 수입국에서도 수입 검사율 축소, 통관 시 우선 검사, 비상 시 우선조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현재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중으로, 발효 시 해당 기업은 물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베트남 AEO 제도의 베트남 공식명칭은 '세관우대제도'이며, 베트남 관세청이 AEO로 공인한 기업을 '우대기업(베트남어 약자 DNUT: doanh nghiệp ưu tiên)'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AEO 공인 시 혜택 및 취득 요건을 확인하시어 베트남에서의 수출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AEO 대상

1. 수출입 기업
2. 관세사(운송주선인(forwarding companies))
3. 자본 구성 단계 이전에 총리로부터 허가 받은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조직이나 개인

II. AEO 의 혜택

AEO로 인정되면, 아래의 내용과 같이 통관 절차, 전문 검사, 관세 환급 절차 및 사후통관 검사 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관 검사 시 우대
통관 절차에서 시행되는 서류검사 및 현품검사 면제
단, 법률 위반의 징후가 발견되어 실시되는 검사와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검사는 면제되지 않음
2. 통관절차 시 우선권
세관신고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스캐너 검사를 실시할 경우, AEO 인증 기업이 검사 우선권이 주어짐
통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세관의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음

3. 수입요건 심사 시 우대

관련 법규에 따른 수입요건 심사 대상인 경우, AEO 인증 기업은 요건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수입 물품을 자신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 가능.

요건 심사를 위해 샘플이 채취되어야 하는 경우 우선권 보유

4. 선환급 후심사 혜택

관세 환급 대상인 경우, 세관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와 신청서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환급 신청일로부터 1 근무일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

5. 간접수입 시 혜택

간접 수입(해외 수입자가 지정한 베트남 내의 다른 법인에 인도), 보세 창고로부터 베트남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선수입 후신고 가능

6. 통관 후 관세심사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통관 후 관세심사 면제. 통관 후 관세심사는 AEO 공인 획득일로부터 3년간 1 회 이하로 실시되는데, 검사의 실시 여부는 위험관리 근거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

7. 관세 납부 유예

AEO 공인 업체는 세관 통관 및 반출이 허가된 세관 신고 건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관세 납부 의무

8. C/O 제출 유예

수입통관 단계에서 C/O 제출이 가능한 경우 수입통관완료일 또는 반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C/O 제출

III. 요건

AEO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관세 및 조세 법규 준수

- 1) AEO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의 위법행위로 인해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탈세, 조세 사기, 밀수 및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 운송

- 세관 관련 행정 위반 행위로, 처벌 수준이 관세지국 국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자의 관할권을 벗어난 경우

- 2) 관세사(포워드)인 경우 자사 명의의 세관 신고 서류 중 세관지국 국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자의 관할권에 속하는 세관 및 조세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신고건의 비율이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3) 연체된 세금이 없어야 함.

2. 수출입 매출 요건

서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2년간 평균 매출 금액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위탁 수출입 매출액 제외)

- 1) 연간 수출입 매출 1억 USD 이상
- 2) 베트남에서 제조된 물품의 연간 수출 매출 4천만 USD 이상
- 3) 베트남에서 재배, 생산된 농수산물의 연간 수출 매출 3천만 USD 이상
- 4) 관세사(포워드)인 경우, 자사 명의의 세관 신고 건수가 연간 2만건 이상

3. 전자 통관 절차 및 전자 세금 절차

전자 통관 및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입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4. 수출입 물품 대금 지급

수출입 물품의 대금 지급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은 세관에 계좌번호와 거래 은행 목록을 통지해야 함

5. 내부 통제 시스템

기업의 내부 관리 시스템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기업의 전체 운영을 관리,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하기 위한 규정의 보유 및 이행
- 2) 다음의 수출입 물품의 공급망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내부통제 조치, 수단 보유
 - A. 사업장과 항만 간의 물품 이동 절차 모니터
 - B. 컨테이너가 차량에 적재되기 전에 안전 검사
 - C. 울타리, 입구, 출구, 보세창고, 제조 구역, 행정 구역 등 중요구역의 감독
 - D. 직무에 부합하는 근무지 배치 및 인사이동
 - E. 정보 기술 시스템의 보안 통제
 - F. 직원 보안 보장

6. 회계, 감사 법률 준수

연간 재무제표는 독립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계 감사 기업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은 베트남의 감사기준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IV. 절차 및 처리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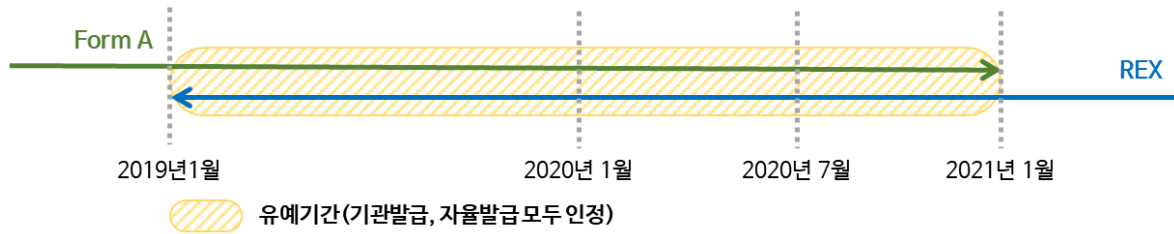
- 접수 서류 확인 및 불충분한 서류 수정 요청: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현장 심사: 5영업일 이내
- 최종 결정문 통지: 서류 접수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

EU, 베트남의 GSP 원산지 증명 방식 기관발급(Form A) 2020년까지 허용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며 GSP 관세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나 MOIT(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발급받은 Form A만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었습니다. (기관발급)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REX 제도가 도입되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선택이 가능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Form A의 기관발급을 중단하고 REX 제도를 이용한 자율발급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율발급 방식에서의 전면 전환 시기가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되었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일부 국가가 REX 제도를 이용한 자율발급으로의 전면 전환 시한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한 점을 고려하여, EU는 베트남 수출물품의 GSP 원산지 증명방식의 자율발급 전면전환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으니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 espark@shcs.kr, scv@shcs.kr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 규칙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사유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지원 관세사

jwn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 품목분류

주요 내용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제2조, 제3조)
 - ①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②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규정(제5조, 제6조)
 - ① (대상)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 ② (지급액) 실제 검사비용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제9조~제15조)
 - ① 신청인(화주, 관세사 등)은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②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 여부, 신청자격여부, 검사결과 이상 여부,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심사

- 업무위탁의 근거 및 수탁자의 심사범위와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 (제16조~제22조)
 - ①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 ② 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업무지휘·감독에 대해 규정, 업무처리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

규제대상 여부

해당 없음

참고 사항

수출입화물검사 비용의 지원범위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규제 대상은 별도로 정해지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 제외 대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지원제외

- ① 세관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 ②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관세 관련 심판사례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일시 사용한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13.11.6. 국제대회참가를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다가, 2014.1.3.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국제대회는 관세법 제99조에 규정된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물품 국제대회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김윤현 관세사
yun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및 조사
- 품목분류
- 외환자문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후 재수입되었을 뿐, 그 가치가 증가하였거나 종전에 수출될 때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만약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참가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 효시)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었으므로 국제대회 참가계약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의 창출이 동반하지 않는 '사용'도 재수입면세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용'에 해당된다. (2) 민법상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바 국제대회참가계약을 '도급계약 등'으로 볼 수 없어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은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론

해당 건과 유사한 재수입 면세제도 적용에 대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제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일시 반출하는 물품 등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시행일 2020. 3. 13)

국산품 비과세와 이중과세 면제를 위해 운영되는 재수입면세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범위 및 적용대상에 대한 좀 더 넓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으로 기업들은 재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재수입물품이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